

소수집단학생지원 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5.05.08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소수집단학생지원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소수집단학생 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
2. 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
3. 소수집단학생 지원결과 및 보고에 관한 사항
4. 기타 소수집단학생 지원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 (구성)

- ① 장애학생지원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겸직한다.

제4조 (임기)

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(위원장 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생팀 당연직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 (회의 및 의사의결)

-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학생팀 담당직원으로 한다.

제8조 (회의록작성)

- ① 회의록은 위원장의 지시로 간사가 작성한다.
- ②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.

부 칙(2025.05.08.)

제1조 (시 행 일)

이 지침은 2025년 5월 08일부터 시행한다.